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 월 19 일

여 수 시 장

2023. 9. 19.



여수시 조례 제1969호

붙임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키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1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11. 10.]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3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0조를 제32조로 하며, 제28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6조로 한다.

제31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1조로 하며, 제27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7조로 하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종전의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③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수리·수선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의 등록 등에 관한 혜택) ①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제공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폐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키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u>2. ~ 9.</u> (생략) <u><신설></u>	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본 조 전문개정 2015. 11. 10.]

<신 설>

제19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자전거의 등록 등에 관한 혜택) ①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제공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

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 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제20조의 2제 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③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수리·수선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기증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7장 보칙

제33조(자전거의 등록)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삭 제>

제23조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